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01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4. 2.

도 하 석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도하석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,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#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
-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홍보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,
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침체와 대형·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도하석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08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2. 2.

발의자: 도하석, 남현주, 김장관,  
강한곤, 박정환, 이진환,  
손범구, 임미연, 황국주,  
고명숙

## 1. 제안이유

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,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근거 규정 마련(안 제5조제1항)
- 나.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조항 신설(안 제6조제1항제4호)
- 다.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, 홍보 지원 관련 조항 신설(안 제8조, 제9조)
- 마.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2
  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2
  - 「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다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한다. ·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”을 “3년마다 수립·시행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역서점 지원)”을 “(지역서점 지원사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시”를 “추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홍보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, 도

서관, 지역서점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홍보)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10조(종전의 제7조)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불임1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<p>제6조(<u>지역서점 지원</u>)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실시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6조(<u>지역서점 지원사업 등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추진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홍보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<u>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</u>)  <p>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p> 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(<u>협력체계 구축</u>)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, 도서관, 지역서점, 관련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<u>홍보</u>)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</p>

<p><u>제7조(표창)</u> 구청장은 구의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에 <u>대하여</u> 표창할 수 있다.</p>	<p><u>제10조(표창)</u> ----- ----- ----- -- <u>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</u> <u>포상 조례」에 따라 ---.</u></p>
<p><u>제8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11조</u> (현행 제8조와 같음)</p>

## □ 출판문화산업 진흥법

제7조의2(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(이하 “지역서점”이라 한다)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
  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 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(「도서관법」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)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7.>
-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8. 10.]

## □ 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현행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중·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)**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2.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

3.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
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지역서점 지원)**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사업
2.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,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
3. 창업상담, 컨설팅, 교육 등 창업 지원
4. 그 밖에 지역서점이 구 독서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지원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표창)**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